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0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조은희 · 이인선 · 김재섭
신성범 · 김미애 · 김승수
김용태 · 서천호 · 한지아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심의·의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정도 등”을 “정도, 제13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 방법·기준 등”으로 한다.

⑬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2항 및 제3항,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생략)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심의·의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생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⑬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u>정도 등</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치를 하여야 한다.</u> ⑭ ----- ----- ----- ----- ----- -----<u>정도,</u> <u>제13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u> <u>방법·기준 등</u>----- -----.
--	---